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9. 7 선고 2023가단105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나222169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9. 7 선고 2023가단10583 판결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정지은

변 론 종 결 2023. 8. 10.

판 결 선 고 2023. 9.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금전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07. 1. 15.(개업)부터 2019. 10. 31.(폐업)까지 논산시 C에서 'D공판장'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B의 매형이다.

나. 원고 산하의 대전지방국세청은 2019. 7. 11.부터 2019. 10. 25.까지 B가 운영하는 D공판장의 2014년부터 2018년 귀속 소득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가 위 기간 동안 D공판장의 현금 매출 9,156,071,337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논산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이에 논산세무서는 2019. 11. 11. B에게 납부기한을 2019. 11. 30.로 하여 2014년부터 2018년 귀속 소득세 및 2014년 2기부터 2018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2,577,421,28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또한 논산세무서는 2020. 2. 16. B의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53,870,00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가산금 등을 포함한 B의 체납세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B는 2019. 8. 14.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10,000,000원권 수표 31장 총 310,000,000원을 발행하였는데, 이 중 150,000,000원은 2019. 8. 16. 피고의 자녀인 E의 계좌 4개에 입금되었다가 이후 2020. 8. 18.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이하 위 150,00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21. 8. 30. 피고를 포함한 소외 A, E, F, G(이하 '전소 피고들'이라 한다)를 상대로 B와 전소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금전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가합1537,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이 사건 금원이 B의 소외 E에 대한 증여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 'E와 B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12. 21. 'B, E,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을 E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킨다는 의사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다10134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면서 H가 원고로부터 체납세금 납세고지를 받은 이후 자신의 예금계좌로부터 금원을 인출하여 전소 피고들에게 나누어 송금한 것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H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전소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에 의한 것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는데,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중에는 이 사건 금원 송금행위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H와 E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으로 보고 E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1. 17.자 준비서면에서 “B가 피고에게 교부한 3억 1,000만 원을 피고의 딸인 E 명의로 예금한 것이고 E 이름으로 5,00만 원 씩 분산하여 3곳의 금융기관에 입금한 경위는 금융기관별 예금보호금액 한도가 5,000만 원이어서였다.”라는 주장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21. 11. 23.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2021. 23.에는 이 사건 금원이 실질적으로 E가 아닌 피고에게 지급된 것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늦어도 2021. 11. 23.경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채무자 B의 사해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2. 1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의 소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판사 이숙미

B 의 국세 채납내역

세목	귀속	최초 납부기한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세액	채납액	비고
종합소득세	2014	2019.11.30.	2014.12.31.	400,739,920	523,967,090	세무조사 고지분
종합소득세	2015	2019.11.30.	2015.12.31.	386,975,490	505,970,220	
종합소득세	2016	2019.11.30.	2016.12.31.	371,942,980	486,315,350	
종합소득세	2017	2019.11.30.	2017.12.31.	324,707,150	424,554,460	
종합소득세	2018	2019.11.30.	2018.12.31.	310,682,890	274,565,220	
부가가치세	2014.2기	2019.11.30.	2014.12.31.	115,403,480	150,889,820	
부가가치세	2015.1기	2019.11.30.	2015.06.30.	89,236,130	116,676,200	
부가가치세	2015.2기	2019.11.30.	2015.12.31.	114,071,760	149,148,520	
부가가치세	2016.1기	2019.11.30.	2016.06.30.	89,214,970	116,648,480	
부가가치세	2016.2기	2019.11.30.	2016.12.31.	91,064,640	119,066,830	
부가가치세	2017.1기	2019.11.30.	2017.06.30.	70,559,840	92,256,660	
부가가치세	2017.2기	2019.11.30.	2017.12.31.	82,171,600	107,439,100	
부가가치세	2018.1기	2019.11.30.	2018.06.30.	60,750,460	79,430,910	
부가가치세	2018.2기	2019.11.30.	2018.12.31.	69,899,970	91,393,840	
소합계				2,577,421,280	3,238,322,700	수정신고 무납부
종합소득세	2017	2020.03.15.	2017.12.31.	17,770,000	22,834,280	
종합소득세	2018	2020.03.15.	2018.12.31.	36,100,000	46,388,500	
소합계				53,870,000	69,222,780	
합계				2,631,291,280	3,307,545,480	

